

1. 개정사유

‘26.7월 개정된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5 (’27.1월 시행)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고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같은법 제9조의5 제4항에 따라 위임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세부 업무 규정(안 제12조)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5제2항제5호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그 밖에 센터의 세부 업무사항에 대해 규정함

나.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가 수행하는 포장점검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3조)

- 같은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라,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가 수행하는 포장기준 이행여부 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9조제3항”을 “제9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9조제3항”을 “법 제9조제5항”으로 한다.

1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 제6조 중 “법 제9조제4항”을 “법 제9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,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법 제9조의5제2항제5호에서 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제조자등의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업무
2. 포장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기술자료의 개발·보급 및 교육·홍보에 관한 업무

3. 포장기준에 관한 국내외 조사·연구에 관한 업무

4.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보유한 포장기준 관련 검사 정보의 수집·관리 및 통계·분석 등에 관한 업무

5. 법 제9조의5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·관리·분석 및 활용 등을 위한 제품포장관리종합시스템의 구축·운영

③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지침으로 정한다.

제13조(제품포장 이행관리) ① 제12조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포장기준의 효율적인 이행점검을 위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 수립 시 점검 대상별로 주기 또는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자등은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1. 제3항에 따른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

2. 최근 3년 이내 포장기준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

3. 포장기준 위반과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경우

4. 그 밖에 제품·포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③ 센터장은 제조자등에게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율평가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1. 제조자등의 상호·성명 및 소재지
2. 단위제품 및 종합제품의 명칭·규격 및 제조·수입 또는 판매 현황
3. 단위제품 및 종합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자료
4. 수송포장재의 규격·재질 및 사용 현황
5. 그 밖에 포장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자료

④ 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또는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⑤ 센터장은 이행점검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제조자등의 상호·성명 및 소재지
2. 위반 사실 및 위반한 기준의 내용
3. 확인 방법 및 확인 경위
4. 그 밖에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점검계획의 수립, 점검대상의 선정, 자료의 제출, 현장점검 또는 사실조사, 이행점검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지침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) ①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3항에서 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1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<u>한국환경공단</u> 2. 3. (생략)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5조(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) ① ----- ----- ----- 제9조제5항----- ----- -----. 1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<u>한국환경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</u> 2. 3. (현행과 같음) ② 법 제9조제5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6조(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)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.
제6조(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)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.	제6조(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) 법 제9조제6항----- ----- ----- -----.

<신 설>

제12조(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

설치·운영 등) ① 기후에너지환

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5제1항

에 따라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

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

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법 제9조의5제2항제5호에서

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

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”란 다음

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제조자등의 포장폐기물 발생

억제를 위한 기업지원 등에

관한 업무

2. 포장기준의 준수에 필요한

기술자료의 개발·보급 및 교

육·홍보에 관한 업무

3. 포장기준에 관한 국내외 조

사·연구에 관한 업무

4.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

이 보유한 정보의 수집·관리

및 분석 등에 관한 업무

5. 법 제9조의5제2항 각 호와 관

련된 정보의 수집·관리·분석

및 활용 등을 위한 제품포장

<신 설>

관리종합시스템의 구축·운영

③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
은 전년도의 운영실적과 해당
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3월 31
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
사항 외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
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
공단의 지침으로 정한다.

제13조(제품포장 이행관리) ① 제
12조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
센터의 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
한다)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
른 포장기준의 효율적인 이행점
검을 위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할
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
계획 수립 시 점검 대상별로 주
기 또는 방법을 달리 정할 수
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자들은 우
선 점검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1. 제3항에 따른 제출 자료가 사
실과 다른 경우

2. 최근 3년 이내 포장기준 위반
이력이 있는 경우

3. 포장기준 위반과 관련한 신
고 또는 민원이 반복적으로
제기된 경우

4. 그 밖에 제품·포장의 특성
등을 고려하여 포장기준 준수
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
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③ 센터장은 제조자등에게 제4
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율평가
결과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
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1. 제조자등의 상호·성명 및
소재지

2. 단위제품 및 종합제품의 명
칭·규격 및 제조·수입 또는
판매 현황

3. 단위제품 및 종합제품의 포
장재질·포장횟수 및 포장공
간비율에 관한 자료

4. 수송포장재의 규격·재질 및
사용 현황

5. 그 밖에 포장기준의 준수 여
부에 관한 자료

④ 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

제12조 (생 략)

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또는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⑤ 센터장은 이행점검 결과 포 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제조자등의 상호·성명 및 소재지

2. 위반 사실 및 위반한 기준의 내용

3. 확인 방법 및 확인 경위

4. 그 밖에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점검계획의 수립, 점검대상의 선정, 자료의 제출, 현장점검 또는 사실조사, 이행점검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지침으로 정한다.

제14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